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6. 2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5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113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5. 6. 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 영 남

가. 제안이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및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 보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을 위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307명을 1,31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81명을, 1,288명으로 총 7명을 증원함.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 (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과 2005.4.22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정원을 2005.5.17 서울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 승인 통보에 의하여 구분청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307명에서 1,314명으로 7명(6급1명, 7급1명, 8급3명, 9급2명) 증원하고, 증원된 정원 7명은 안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정원에 포함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은 1,281명에서 1,288명이 되겠으며, 2005년도를 기준으로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에 대한 연간 소요비용은 기본급 등의 인건비로 2억4,406만2천원, 연금부담금 등의 이전경비로 2,747만9천원 등 총 2억7,154만1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사회복지직 7명 채용 방식은?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서울시에 의뢰해서 신규로 채용할 예정임.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서울시에서 직급별로 오는 것인가?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9급 신규직원이 오는 것이고 타 직급은 자체적으로 내부승진 하는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5. 6.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및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 보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을 위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307명을 1,31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81명을, 1288명으로 총 7명 증원함.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 (안 제2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2004.1.29 법률 제7128호)제103조
-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2004.12.18 대통령령 제18603)제14조 및 제21조
- (3)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321, 2005.4.22)

나. 예산조치 : 예산팀 협의 완료

다. 협의

-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3120(2005.04.25) 및 조직담당관-3699(2005.05.16)호
- (2) 지방공무원법제8조제1항5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완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1) 입법예고 (2005. 5.20 ~ 6. 9) 결과, 특이한 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 (4)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본문중 “1,307명”을 “1,314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281명”을 “1,288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14	901	26	91	296
정무직 계	1	1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38	625	13	76	224
3급	1	1			
4급	7	5	1	1	
5급	59	25	2 (행정 또는 별정)	8	24
6급	175	136	3	12	24
7급	271	168	4	27	72
8급	293	204	3	22	64
9급	132	86		6	40
별정직 계	12	6	5	1	0
6급 상당	1	1			
7급 상당	9	5	3	1	
8급 상당	1		1		
9급 상당	1		1		
기능직 계	363	269	8	14	72
6급	5	5			
7급	14	14			
8급	33	29			4
9급	93	65	6	3	19
10급	218	156	2	11	49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07명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81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 - - - - - - - 1,314명 - - - - - - - 1. - - - - - : 1,288명 2. (현행과 같음)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총 계	1,307	894	26	91	296	1,314	901	26	91	296
정무직 계	1	1	0	0	0	1	1	0	0	0
구청장	1	1				1	1			
일반직 계	929	618	11	76	224	938	625	13	76	224
3급	1	1				1	1			
4급	7	5	1	1		7	5	1	1	
5급	57	25	0	8	24	59	25	2 <small>(별정직)</small>	8	24
6급	174	135	3	12	24	175	136	3	12	24
7급	270	167	4	27	72	271	168	4	27	72
8급	290	201	3	22	64	293	204	3	22	64
9급	130	84		6	40	132	86		6	40
별정직 계	14	6	7	1	0	12	6	5	1	0
5급 상당	2		2			0		0		
6급 상당	1	1				1	1			
7급 상당	9	5	3	1		9	5	3	1	
8급 상당	1		1			1		1		
9급 상당	1		1			1		1		
기능직 계	363	269	8	14	72	363	269	8	14	72
6급	5	5				5	5			
7급	14	14				14	14			
8급	33	29			4	33	29			4
9급	93	65	6	3	19	93	65	6	3	19
10급	218	156	2	11	49	218	156	2	11	49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6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2조

2. 정원의 변동 내역

-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 증원 [6급 1, 7급 1, 8급 3, 9급 2]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71,541	
○ 인건비	244,062	
- 기본급	137,232	6급 24호 1명
- 수 당	43,887	7급 17호 1명
- 정액급식비	10,920	8급 12호 3명
- 교통보조비	10,440	9급 8호 2명 기준
- 명절휴가비	12,905	
- 가계지원비	21,509	
- 연가보상비	7,169	
- 기타직보수	-	
- 일용인부임	-	
○ 물건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이전경비	27,479	- 7명 증원 기준
- 성과상여금	6,518	
- 연금부담금	15,824	
- 국민건강보험금	5,137	
- 연금지급금	-	